

정기종합감사

2018.8.27 ~ 9.5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8.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서민금융진흥원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3
3. 연도별 수입·지출예산 및 결산	3
III. 감사실시 결과	5
1. 분야별 감사결과	5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20
3. 감사결과 처리요령	21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감독 등)

※ 최근 서민금융진흥원(舊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15.10월 실시

□ 감사기간 : 2018. 8. 27(월) ~ 9. 5(수), 8일간(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의사결정기구,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 서민금융과 1명, 예금보험공사 1명, 한국회계기준원 1명 지원 포함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미소금융, 개인신용보증, 자활지원, 사업수행기관 지원·감독 등

- 운영위원회·휴면예금관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운영의 충실성

- 예산, 계약사무, 회계처리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 준수여부

- 내부통제의 실효성 등

II. 서민금융진흥원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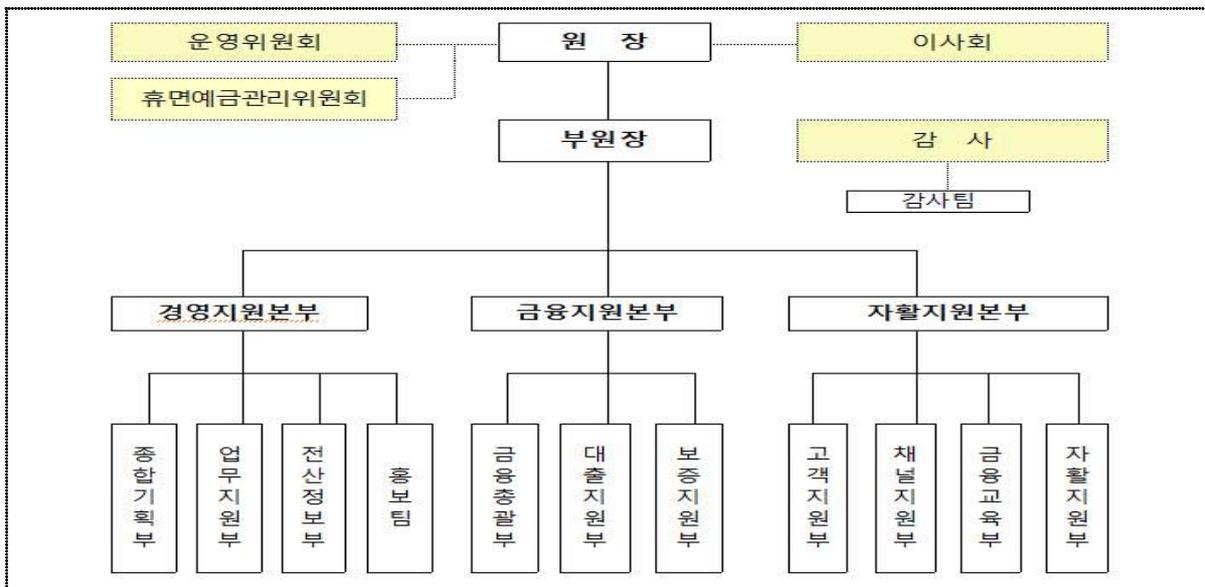
- 2016.3.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관 설립 근거 마련
- 2016.9.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
- 2018.1.3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타 공공기관’ 으로 지정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5층

□ 조직 및 인원 : 3본부 10부(194명, 18년 7월 기준)

- * 원장 : 이계문(60년생) / 동국대(산업공학),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 감사 : 안상정(64년생) / 성균관대(정외), 개성공단지원재단 사무국장
- 부원장 : 최건호(59년생) / 한양대(경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민금융진흥원 조직도>



2.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금융 지원 (건/억원)	미소금융	42,564/3,820	42,724/4,207	43,829/4,573	17,985/2,126
	근로자 햇살론	-	203,757/18,286	251,713/29,799	118,413/12,114
	국민 행복기금	-	9,425/1,343	4,680/763	3,546/599
자활 지원	교육(명)	-	13,200	45,531	35,022
	취업지원(명)	-	-	13,335	7,242
	맞춤대출 (건/억원)	-	20,688/2,330	20,147/2,470	9,788/1,206
	자영업컨설팅(건)	1,562	1,439	3,315	2,361
	종합상담(건)	-	-	2,046	3,910

3. 연도별 수입·지출예산 및 결산

	2016 ¹⁾		2017			2018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수입총액(억원)	4,517	4,517	5,183	9,602	4,419	8,090	-
출연금	1,060	1,060	2,060	5,453	3,393 ²⁾	3,645	-
복권기금	1,750	1,750	1,750	1,750	-	1,750	-
대출금회수 등	1,116	1,116	900	1,262	362	1,483	-
기타	591	591	473	1,137	664 ³⁾	1,212	-
지출총액(억원)	2,681	2,681	3,594	5,194	1,600	7,705	-
사업비	2,567	2,567	3,227	4,965	1,738 ⁴⁾	7,399	-
경상운영비	81	81	229	131	-98	154	-
인건비	33	33	120	98	-22	131	-
기타	-	-	18	-	-18	21	-

1) 2016년분은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서민금융진흥원 결산분 합산

2) 출연금 증가(3,393억원) → 자기앞수표 2,563억원 + 휴면보험금 등 830억원,

3) 기타수입(664억원) → 보증료 수입 590+ 법인세 환급 등 74

4) 사업비(1,738억원) → 대위변제금 1,738억원 증가

□ 2015년~2017년도 재무상태(B/S)

(단위 : 억원)

	과목별	2015	2016	2017
자산	유동자산	6,470	8,189	12,950
	대출채권	1,766	2,296	3,420
	비유동자산	3,569	3,852	3,777
	합계(A+B)	11,805	14,337	20,147
자본	자본금	-	148	200
	기본재산	10,587	12,381	19,089
	이익잉여금(미처분잉여금)	811	△269	△3,407
	소계(A)	11,398	12,260	15,882
부채	유동부채(휴면예금 등)	406	1,220	1,611
	비유동부채(대위변제준비금 등)	1	857	2,654
	소계(B)	407	2,077	4,265

※ '16.1~9.22까지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었으나, '16년도 재무상태는 서민금융진흥원 연말 재무상태임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보수제도 및 운용관련

①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개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직 및 별정직 직원(이하, '계약직등'이라 한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
 - '15.9.24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8월에 입사한 계약직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켰으나, 그 이후 일반직 정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전환실적이 없음
- 서민금융진흥원의 일반직은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바, 시험응시 인원대비 최종 합격자 비율이 0.7~1.2%로써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직과 채용자격기준, 채용절차 및 직무수행 업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최근 3년간 진흥원 일반직 신입직원 채용시험 현황>

(단위 : 명, %)

발령일자	채용방식	응시인원(A)	최종합격인원(B)	합격률(B/A)
17.1.2	공개채용	1,205	8	0.7
'17.6.7	공개채용	957	11	1.1
'17.12.18	공개채용	951	11	1.2
'18.6.4	공개채용	743	6	0.8

- 이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직종간 구분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 경쟁절차 미비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연공서열에 따라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향후 직원 임용과정에서 기존 내부직원 및 외부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행 일반직 전환 임용제도를 개선할 필요 (통보)

② 인사위원회 규정 및 위원 구성 개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상임이사, 본부장과 원장이 위촉하는 2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규정은,
- 부원장, 본부장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직제와 불일치하며
- '17.12.26일 제7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승격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시 승격심사 대상자 2명을 위촉 위원으로 선정하여, 승격 심사시에는 이해관계 소지로 위촉위원 2명이 심사에 불참함으로써 부원장과 본부장 1인만이 심사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심도있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향후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이 실제 정원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개선요구)

③ 퇴직자 보수 일할계산 적용 필요

- 기획재정부 「'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보수(인건비)는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 「공무원 보수규정」 제44조에서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일할계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①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② 2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의무수행 휴직하는 경우, ③ 공무로 인한 사망 등으로 면직되는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예산 집행지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보수규정 제7조에서 퇴직 직원에게 **해당 퇴직 월의 보수(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 최근 3년간 6명의 퇴직자에게 **해당 근무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퇴직월의 1일을 근무한 직원에게까지 보수 월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상기 공기업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진흥원 퇴직자 퇴직월 보수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성명	퇴 직 발령일	보 수 지급액	퇴직월 지급액	비고 (일 할계산)
2016	갑○○	16.09.03	1,577	1,577	158 (3일)
	을○○	16.12.13	1,716	1,716	720 (13일)
2017	정○○	17.04.01	3,224	3,224	107 (1일)
	무○○	17.08.08	2,655	2,655	685 (8일)
	기 ○	17.11.10	2,223	2,223	741 (10일)
2018	경○○	18.03.07	2,060	2,060	465 (7일)

⇒ 금융 공공기관의 퇴직자 보수 과다지급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퇴직자 보수지급제도를 개선할 필요 (개선요구)**

나 예산 집행/회계처리

①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부적절

- 서민금융진흥원 예산집행 세칙에서 회의운영비 예산 과목은 운영위원회 등 각종 대내외 회의를 위한 회의관련 참석수당, 교통비, 식대, 소모품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 회의운영비 성격과 다르게 단순한 일상적 내부회의를 위한 음료 비용 등으로 '16.9월~'18.7월말까지 총 13,64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 '18년에는 복리후생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생일자 축하 및 조직문화 행사 비용 등을 회의운영비에서 총 571천원을 집행함으로써 회의운영비 총 14,211천원이 예산세칙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음

< 최근 3년간 회의운영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지출명	거래 내용	2016.9월 ~		2017		2018.7월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복리성 행사	생일자 축하 행사	음료 케익 등	복리후생비에서 집행				4	291	4	291
	조직문화 조성 통통팀 선발	식대 등	"				2	280	2	280
소계						6	571	6	571	
일상적 내부회의	간부회의	음료 식대	2	579	9	3,362	6	962	17	4,903
	기타 각부서 내부회의	음료 식대	7	570	54	4,349	35	3,818	96	8,737
소계			9	1,149	63	7,711	41	4,780	113	13,640
합계			9	1,149	63	7,711	47	5,351	119	14,211

- 또한, 조직 내부 친목도모행사 등을 위한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행사비는 창립기념, 시무식·종무식, 송년회 등 대내외 행사경비*에 사용되는 예산과목으로 예산 비목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로 집행되어야 할 생일자 축하케익 구입 등을 위해 행사비에서 '18년 1월~7월간 총 15건, 총 6,031천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행사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지출명	거래 내용	2016.9.23 ~ 2017	2018.1~7월말	
			건수	금액
생일자 축하행사	음료 케익	복리후생비에서 집행	6	574
시무식 상품권	상품권	"	1	400
호프데이 행사	음료	18년부터 시행	2	1,407
진흥원 1회용품 줄이기	텀블러 제작	18년부터 시행	2	3,300
조직문화 조성 통통팀 선발	식대	복리후생비에서 집행	4	350
계			15	6,031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여비규정은 업무차량 이용시 일비를 감액하는 규정이 없고, 본부장급 이상에게만 식비를 한도 없이 실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 예산지침과 부합하지 않음

<진흥원 여비규정상 국내출장여비 지급표 >

(단위: 원)

구분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임원	KTX특실	실비	실비	실비	30,000	실비	실비
본부장	"	"	"	"	"	"	"
부장	KTX일반실	"	"	"	20,000	60,000	27,000
부원	"	"	"	"	"	"	"

- 그 결과, '16.9월부터 '18.8월말 현재까지 출장시 임원과 현장 직원 등과 식대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여비 항목에서 총 10건, 총 281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

⇒ 향후 복리후생비 성격 경비를 회의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거나, 간담회 식비를 출장여비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집행 관리를 개선 필요(개선)

② 업무용 차량 관리 미흡

-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용차량 3대, 공용차량 7대를 포함하여 총 10대의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바, 업무용 차량관리 세부기준에 의하면 공용차량을 배차 받고자 하는 경우, 배차 1일전 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업무관리시스템에 사용목적, 사용일시 등을 신청하고 우선 신청자에게 먼저 배차하여야 하나
 - 본부장 및 고문은 사전 배차 신청 없이 출퇴근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규정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임직원이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자를 두고 운전자가 차량운행 종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 전용 차량과 본부장들이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경우 운용목적, 행선지 등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업무목적에 따른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이며, 사용목적이 엄격히 제한되는 주말에 운행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차량관리가 미흡

⇒ 공용차량이 출퇴근 등 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운행일지 작성·관리 철저 (개선)

③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개선 필요

- 「미소금융지점 업무처리 세칙」 제67조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고, 해당 비율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 서민금융진흥원은 '06년도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설정된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07년 변경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 「은행업감독규정」의 최소적립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며,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의 최소적립기준보다도 낮은 수준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변경('07년) 전·후 은행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 전		변경 후	
	대출채권	가계자금대출	대출채권	가계자금대출
정상	0.5%	0.75%	0.85%	1%
요주의	2%	8%	7%	10%
고정	20%	20%	20%	20%
회수의문	50%	55%	50%	55%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 따라서 변경된 감독규정의 최소적립기준에 따라 현행보다 17~2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준거 규정에 따른 추가 대손충당금 산정금액 비교>

자산 건전성 분류	17년말 서민금융진흥원 대손충당금(현행)			은행업(대출채권)		은행업(가계자금대출)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	적립률	대손 충당금	적립률	대손 충당금	적립률	대손 충당금
정상	2,452억원	0.5%	12억원	0.85%	21억원	1%	25억원
요주의	154억원	2%	3억원	7%	11억원	10%	15억원
고정	40억원	20%	8억원	20%	8억원	20%	8억원
회수의문	35억원	50%	18억원	50%	18억원	55%	19억원
추정손실	324억원	100%	324억원	100%	324억원	100%	324억원
합계	3,005억원		365억원		382억원		391억원
추가설정					17억원		26억원

⇒ 변경된 타 업권 감독규정 등의 적립비율을 참고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할 필요 (권고)

④ 자금운용계획 수립방식 개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관리규정」 제6조에서는 향후 3개월간의 자금소요예상액을 산정하여 적정유동성 규모를 유지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월 1~2회 **향후 3개월간의 자금 수지를 예측하여 현금성자금(만기 3개월 이내) 보유 규모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 **향후 1년간의 자금 수지까지 예측한다면, 단기 유동성 자금(만기 1년 이내)의 적정 보유 규모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관리할 수 있음***
- * 서민금융진흥원은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연 1회만 향후 1년간의 자금 수지 규모를 예측하고 있음
- ※ 기획재정부에서 '18년 1월 발표한 「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매월 향후 1년간 발생할 자금수입과 지출을 추정하여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

<운용자금의 분류(가이드라인 참조)>

단기 자금	현금성 자금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수시입출금식 계정 자금(만기 3개월 미만)
	유동성 자금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환매성 있는 자산에 투자된 자금(만기 3개월~1년 미만)
중장기자금		자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

⇒ 서민금융진흥원의 최근 자금규모 증대와 운용방식 개선 방향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향후 1년간의 자금수지 예측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 (권고)

다 고유업무

① 햇살론 구상채권 손해금률 인하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구상채권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햇살론 구상채권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손해금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손해금률*을 연 12%로 규정

* 손해금률이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한 일종의 연체이자 금리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상기 손해금률을 연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나

○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각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손해금률을 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은 손해금률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연 10%, 주택금융공사는 연 8%를 적용

- 또한 햇살론과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바퀴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손해금률을 연 10%로 규정

<타 보증기관과의 손해금률 비교>

구분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주택금융 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바퀴드림론)
손해금률	12%	10%	10%	8%	10%
시행시기	'16.9월	'16.2월	'16.2월	'15.9월	'08.12월

○ 그런데 햇살론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 서민금융진흥원의 손해금률은 타 보증기관의 손해금률에 비해 높은 수준

⇒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구상채권에 대한 손해금률을 타 보증기관의 손해금률에 준하여 인하할 필요 (권고)

② 구상채권 상각기준 및 원금감면기준 개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구상채권상각기준」 제3조에 따라 상각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8.8월 현재 동 기준에 따라 상각된 구상채권 실적이 전무하며,

- 구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규정에도 감면대상이 모호하거나 엄격하여, 현재까지 채무자의 사망·심신장애의 경우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면책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에 대해서만 일부 원금감면을 실시하는 등 감면비율 등 감면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

<서민금융진흥원 보유 구상채권 규모(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7월
구상채권 규모	361	2,371	4,563

<최근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구상채권 사유별 원금감면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8월	계
사망	-	-	-	-
심신장애	-	-	-	-
파산면책결정	1.1억원 (17명)	22.5억원 (308명)	21.1억원 (261명)	44.7억원 (586명)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	-	-	0.02억원 (2명)	0.02억원 (2명)

※ '17.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은 '회수 불가능'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상각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상채권)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감면 기준을 정비 (예. 일반채무자는 최대 60%까지 감면하되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현행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채권 상각기준 및 원금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자체의 채무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 (권고)**

③ 노후행복설계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등 7개 기관은 '15.10월 서민의 노후대비 지원을 위한 노후행복설계센터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아울러, 서민들이 노후행복설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1 채무설계 상담 또는 미래설계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 노후행복설계센터 개설 이후 MOU 체결 기관간 실무협의회가 한 차례도 없었고, 상담사 교육은 2017.6월 1 차례(16시간)에 불과하며,
 - '15.10.21.부터 '18.7월말까지 센터 상담 실적은 총 13,459건으로 전체 상담 실적의 99.3%(13,370건)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상담이고, 타 기관의 상담실적은 미미한 실정

<연도별 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 실적>

(단위 : 건)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7월말	계
주택금융공사	22	4,577	6,422	2,349	13,370
신용회복위원회	53	10	1	0	64
KEB하나은행	7	0	0	3	10
금융감독원	6	3	0	0	9
미래에셋생명	5	1	0	0	6
계	93	4,591	6,423	2,352	13,459

⇒ 서민금융진흥원은 노후행복설계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으로서 노후행복설계센터 홍보등 동 센터 기능을 재점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통보)

④ 바뀌드림론 신청시 신용정보조회 비용 부담 개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두고 제도권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뀌드림론을 운영 중

* '13.3.29. 국민행복기금 출범, '16.9.23.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편입

○ 국민행복기금은 바뀌드림론 신청 시 고객의 채무 정보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조회에 따른 수수료(건당 2,000원)를 고객 부담으로 처리

* '17년 바뀌드림론 상담·신청자 11,429명에 대한 수수료는 총 2,286만원

○ 이로 인해 고객들은 신용정보업자에게 계좌 입금, 바뀌드림론 접수창구에 입금증 제출 등의 불편을 겪고 있고, 각 접수창구에서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사후 입금처리를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

⇒ 서민금융진흥원은 국민행복기금 바뀌드림론 신청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고객이 부담하는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개선요구)

라 계약관련 업무

① 공고기간 미준수 및 입찰정보 미공시 등 계약업무처리 미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업무 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금품·향응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을 약정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18.3월 지정법무사 선정 입찰과정에서 청렴계약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례(총 2건)*가 발생

□ 한편, 상기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4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므로, 최소 12일 이상은 입찰을 공고하여야 하나

○ '18.6~8월 정책서민금융 제도 평가 등 총 3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공고기간(12일) 보다 총 1~2일 짧게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공고기간 미준수 현황>

사업명	제안서 제출 마감일	규정상 공고일	실제 공고일	실제 공고기간	규정 위반 공고일수
정책서민금융 제도 평가	'18.6.27	'18.6.16	'18.6.18	10일	2일
맞춤형 종합상담 시스템 구축	'18.8.20	'18.8.9	'18.8.10	11일	1일
취업지원 시스템 및 포털사이트 기능개선사업	'18.8.23	'18.8.12	'18.8.14	10일	2일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 계약 정보를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시작일(입찰 개시일) 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 '18.5 ~ 7월 정보시스템 화재보험 입찰공고 등 총 4건의 계약 정보에 대하여 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계약정보 관련 알리오 미공시 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방법	입찰 개시일
1	정보시스템 화재보험 입찰공고	일반경쟁입찰, 최저가낙찰	'18.5.9
2	정보보안 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8.5.29
3	정보시스템 화재보험 재입찰공고	일반경쟁입찰, 최저가낙찰	'18.5.30
4	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정보보안 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8.7.19

- 또한, '18.4 ~ 8월중 주거대출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등 총 7건의 계약정보에 대하여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시작일(입찰 개시일)을 경과하여 알리오에 지연공시(총 1~4일)

⇒ 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입찰정보 미공시 및 지연공시 등 계약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개선요구)

마 기타 (모범사례)

① 현장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서민 대출의 실현

□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하여 영세상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수행중

□ 소액대출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331개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회장과 실무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실태(전수)조사(17.6.1~8.18)를 추진*

* 지난 10여년간 초기 사업구조를 지속해 오면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전면적인 사업 평가가 필요하였음

○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인회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분석한 후, 그 결과를 업무 개선방안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

□ 그간의 동 사업 추진이후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음

① (우수 상인회에 대출한도 확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인회에 대출한도를 확대 실시(18.3월)

② (계약해지 상인회 방문을 통한 지원금 회수) '18.7월말까지 24개 계약해지 상인회에 방문·지도를 통하여 2.3억원을 회수(17.8월~)

③ (연체율 감소) '17.6월말 38.7%에서 '18.6월말 33.6%로 5.1%p 감소

④ (영세상인의 상환부담 완화) 대출기간 연장(1년→2년) 및 대환대출제도를 통하여 영세상인의 상환부담을 완화(17.12월)

□ 수기 사업을 전산화하여 통계산출 등에 정확성을 기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 전통시장 상인회의 사업수행능력에서 취약부분을 발견·보완하여 계속사업 기반을 견고화할 것으로 기대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보수 제도관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개선 필요 ■ 인사위원회 규정 및 위원 구성 개선 필요 ■ 퇴직자 보수 일할계산 적용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통보 개선요구 개선요구</p>
예산집행/ 회계처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부적절 ■ 업무용 차량관리 미흡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요구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개선 필요 ■ 자금운용계획 수립방식 개선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권고 권고</p>
고유업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살론 구상채권 손해금을 인하 필요 ■ 구상채권 상각기준 및 원금감면기준 개선 필요 ■ 노후행복설계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 ■ 바뀐드림론 신청시 신용정보조회 비용 부담 개선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권고 권고 통보 개선요구</p>
계약업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기간 미준수 및 입찰정보 미공시 등 계약관련 업무처리 미흡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요구</p>
기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서민대출 실현 	<p style="text-align: center;">통보(모범사례)</p>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징계 또는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시정요구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